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낙시어선 음주운항 처벌규정 세분화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41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 성 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규정 세분화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16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제안자: 윤준병 의원 등 10인

2. 제안일: 2026. 4. 7.

3. 회부일: 2026.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5톤 미만의 낚시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항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Ⅲ. 검토의견

1.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규정 세분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내수면)에서의 총톤수 5톤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해 ①음주운항하거나 음주운항하게 한 자, ②음주운항하거나 음주운항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10년 이내 다시 ①의 사항을 위반한 자, ③관계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내수면)에서의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정비하며,
- 이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현행 낚시어선 음주운항 및 음주운항 측정거부 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벌칙) <신설>	제53조(벌칙) ① 해상항행선박이 항

<신 설>	<u>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 <u>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u>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u> <u>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u> <u>②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u>
--------------------	---

<신 설>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납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
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
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
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
닌 장소에서 제30조제2항을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이상의 납시어선을 조종하거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
게 납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가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4의3.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

5.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로서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2. ~ 9. (생 략)	6의2. ~ 9.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운항을 금지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1)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제30조제1항2), 「해상교통안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하천·호소 등(내수면)에서의 음주운항 등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톤수의 구분 없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3)하고 있는 반면,
- 해수면에서 운항하는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에 대하여는 총톤수 5톤 이상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4)에 따라 혈중알코

1)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④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술에 취한 상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벌칙) ①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

올농도 별로 별칙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등에 대해서는 해수면과 내수면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두 법률에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조임.

-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의 음주운항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유선·도선, 수면비행선박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규정⁵⁾이 있어 해수면에서의 5톤 미만 낚

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5) 「해상교통안전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시어선의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5톤 이상 처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규정 비교 >

구분	적용	음주운항 처벌		비고
		5톤 이상	5톤 미만	
해수면 낚시어선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 안전법	혈중알코올농도별 세분 (최고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2천만~3천만원 벌금 등)		여객정원 13명 이상 선박·낚시어선 등은 5톤 미만이라도 5톤 이상 기준 적용
내수면 낚시어선 (현행법)	낚시 관리법	톤수 구분 없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톤수 구분 없음
내수면 낚시어선 (개정안)	낚시 관리법	5톤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별 세분(최고 2~6년 징역)	5톤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상교통안전법」 처벌체계와 정합화

□ 현행 법률체계에서 같은 낚시어선이라 하더라도 해수면에서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반면, 내수면에서의 음주운항은 음주 정도와 무관하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도선
- 4) 수면비행선박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의 음주운항 처벌 체계를 반영하여
내수면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처벌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같은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임에도 운항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던 것을 「해상교통안전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음주운항 처벌 규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
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총톤수 5톤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분함에 따라 같
은 낚시어선임에도 운항 수면에 따라 처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과의 정합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해상교통안전법」은 낚시어선·유선·도선·수면비행선박 등
에 대하여 총톤수 5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5톤 이상의 처벌기준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수면에서 운항하는 5톤 미만 낚시어
선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별
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내수면 낚시어선에 대해 5톤 미만과 5톤 이상으로 구
분하여 5톤 이상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5톤 미만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은 음주
정도와 무관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이 해수면에서 음주운항을 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내수면에서 음주운항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음주운항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부분적으로 상충될 소지가 있음.

다만, 내수면(하천·호소 등)은 해상교통량·항행 위험도 측면에서 해수면과 차이가 있어 톤수에 따른 위험성의 차등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처벌 수준의 설정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 현행 「해상교통안전법」도 낚시어선·유선·도선·수면비행선박을 제외한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음주정도와 관계 없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5톤 이상 선박에 비해 다소 과소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5톤 미만 내수면 낚시어선에 대한 처벌 수준을 해수면에서의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처벌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대해서는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항행 위험도, 사고 예방 효과와 다른 선박 관련 법률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낚시어선·유선·도선·수면비행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및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처

벌 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6)」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제4호의3의 음주측정거부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현행보다 축소되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 제53조제2항제6호7)는 음주측정거부의 처벌대상을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여, 음주가 의심되는 자가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음주측정의 요구 요건을 정한 현행법 제30조제2항8)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6) 의안번호 제2218139,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2026.4.7.))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의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이하 생략)

7)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은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데, 개정안은 음주측정거부의 처벌대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음주가 의심되어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음주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음.

음주측정거부죄는 다수의 입법례에서 음주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 불응 행위를 처벌하는 데 그 실익이 있으므로 처벌요건을 실제 음주운행자로 좁히면 측정거부죄의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음주단속·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음주측정거부 관련 입법례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

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생략)

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제79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측정 거부 처벌요건을 “음주상태에서 조종하거나, 음주상태에 있는 자에게 조종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음주가 의심되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음주 측정거부 처벌요건에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관계기관(해양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⁹⁾

문 의 처

02)6788-5419

9)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음주운항 관련 처벌 규정 비교

구분	해수면 음주운항		내수면 음주운항		
선박	유선·도선·낙시어선·어선 등	수상레저기구	유선·도선	낙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적용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 안전법
처분 규정	5톤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세부 구분 5톤미만: 0.03%이상 500만원 이하		<u>톤수 구분 없이</u>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내수면 낙시어선의 경우 6개월 이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2

해상 음주운항 관련 처벌 규정 비교

단속 법규	처분 내용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41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113조(벌칙) 제115조(벌칙) ※ 해수면 유선·도선은 해상교 통안전법 준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 및 제16조) ※ 해수면 낙시어선은 해상교 통안전법 준용(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0조)	5톤 이상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여객정원 13명 이상 선박, 낙시어선, 유선·도선, 수면비 행선박은 5톤 미만이라도 → 5톤 이상 단속법을 적용		
	5톤 미만	0.03%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제39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사람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 거부	5톤 이상	▶ 1회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측정요구를 따르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벌금 여객정원 13명 이상 선박, 낙시어선, 유선· 도선, 수면비행선박은 5톤 미만이라도 → 5톤 이상 단속법을 적용	
		5톤 미만	500만원 이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제61조(벌칙)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 거부				

출처: 해양경찰청

참고 3

음주운항 단속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유·도선	화물선	여객선	낚시어선	어선	예선·부선	기타
2020	119	1	2	-	3	70	9	34
2021	82	-	1	-	2	49	11	19
2022	73	-	2	-	-	36	9	26
2023	90	-	-	-	-	62	7	21
2024	60	-	-	-	-	42	1	17

(2024년 해양경찰 백서)

참고 4

낚시어선 이용 현황

□ 낚시어선업 신고 현황(2020-2025)

(단위: 척)

시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4,536	4,422	4,383	4,293	3,895	3,847
부산	171	174	168	161	149	140
인천	233	205	194	183	175	179
울산	44	43	39	35	37	37
경기	95	90	77	73	60	64
강원	246	267	252	272	265	254
충남	1,060	997	978	978	791	794
전북	262	267	290	252	188	192
전남	860	790	791	797	742	730
경북	129	125	137	132	137	145
경남	1,202	1,210	1,172	1,145	1,097	1061
제주	234	254	285	265	254	251

* 시·도별 낚시어선 신고 현황

□ 낚시어선업 이용객 수(연도별)

(단위: 천명)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승객수	2,959	3,429	4,149	4,284	4,815	5,073	5,281	5,189	4,977	4,959	5,265

* 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출항신고(승선인원) 실적